

【2025학년도 제21차】

규정심의위원회





제21차 규정심의위원회 안건

- 일 시: 2025. 11. 3.(월), 09:30~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 안 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배석	예상시간
1	심의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 건	진천RISE사업단	(진천) 통합지원팀장	'20
2	심의 「「대학원 학칙」」 개정 건	교학팀	교학팀장	'30
3	심의 「직제규정」 개정 건			
4	심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건			

- 추후 일정

규정관련 심의기구(순)	비고
교무위원회	- 2025.11.11.(화)
대학평의위원회	- 2025.11.12.(수) 예정 /학칙 해당
법인이사회	- 미정 / 직제, 인사,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
제22차 회의 예정일	- 2025.11.17.(월) 오전 10:00~

- 학칙 및 직제규정: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

1.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진천RISE사업단	관련부서	진천RISE사업단내 부서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충북 RISE 2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 총 12억 원 규모의 EDUAIR-BIO 및 CPTED·AI공공안전 2개 과제 선정에 따라, 해당 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및 행정적 근거 마련 • 조직 명칭 조정 필요성 (충북RISE센터 권고 사항 반영)		
관련근거 (관계법령)	• 충북RISE센터의 권고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 수행 부서와 행정 지원 부서의 명칭을 '센터'와 '팀'으로 조정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2장 조직: 제4조(단장 등), 제5조(구성) 전문 개정: 기구표 참고 • 제3장 업무: 진천RISE사업단 조직 개편에 따라 제1절 내지 제2절 전면 개정 및 제3절 삭제		

「우석대학교 진천RISE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2 장 조 직	제 2 장 조 직
제4조(단장 등) ①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진천RISE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단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7급이상의 직원</u>으로 보한다. 제5조(구성) ①사업단에는 <u>지역정주형 인재양성 프로젝트</u> 운영을 위하여 <u>특성화인재양성본부</u>를 두고 <u>하부기관으로</u> <u>충북공유대학팀, AI스포츠사이언스연구팀, 지역융합대학팀, K유학생통합연구팀</u>을 둔다. ②<u>사업단에는</u> <u>지산학연협력 생태계구축, 평생교육체계 확대 및 지역현안 해결 프로젝트</u> 운영을 위하여 <u>지역혁신지원본부</u>를 두고 <u>하부기관으로</u> <u>우석다문화운영팀, 스포츠특화도시브랜딩팀, 푸드테크팀</u>을 둔다. ③<u>사업단에는</u> <u>기획예산관리팀, 통합지원팀, 성과관리팀</u>을 둔다.	제4조(단장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사업단의 직원</u>으로 보한다. 제5조(구성) ①사업단에는 <u>진천RISE사업운영본부, 진천RISE사업관리본부</u>를 둔다. ②<u>진천RISE사업운영본부에는</u> <u>혁신기획센터, 지역·기업협업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AI스포츠센터, 생애전환센터, 우석다문화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 EDU·AIR-BIO센터, CPTED·AI공공안전센터, 충북공유대학팀, 푸드테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u>을 둔다. ③<u>진천RISE사업관리본부에는</u> <u>통합관리센터, 기획예산관리센터, 성과관리센터</u>를 둔다. [전문개정 2025.00.00.]
제 3 장 업 무	제 3 장 업 무 [전문개정 2025.00.00.]
제 1 절 <u>특성화인재양성본부</u>	제 1 절 <u>진천RISE사업운영본부</u>
제7조(<u>특성화인재양성본부</u>) <u>충북공유대학팀, AI스포츠사이언스연구팀, 지역융합대학팀, K유학생통합연구팀</u> 업무를 총괄운영 한다. 제7조의2(<u>충북공유대학팀</u>) <u>충북공유대학팀</u>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충북 3대 전략산업(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u>	제7조(<u>진천RISE사업운영본부</u>) <u>혁신기획센터, 지역·기업협업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AI스포츠센터, 생애전환센터, 우석다문화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 EDU·AIR-BIO센터, CPTED·AI공공안전센터, 충북공유대학팀, 푸드테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u> 업무를 총괄운영 한다. 제7조의2(<u>혁신기획센터</u>) <u>혁신기획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진천RISE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차별</u>

현행	개정(안)
인재 양성 2.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 추진체계 구성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11로 이동] 제7조의3(AI스포츠사이언스연구팀) AI스포츠사이언스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산업(진천형 K-스포츠 AI 사이언스)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2. K-스포츠 AI 사이언스 허브 조성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5로 이동] 제7조의4(지역융합대학팀) 지역융합대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산업 기반 지속가능한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2.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직업전환 지원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6로 이동] 제7조의5(K유학생통합연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학생 현장 밀착형 교육 운영 2. 지역 정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13로 이동] <조 신설> <조 신설> <조 신설>	<u>사업기획 수립</u> <u>2. 교육혁신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사업모델 개발</u> <u>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제7조의3(지역·기업협업센터) 지역·기업협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산학연 협력 기반 지역기업 맞춤형 공동사업 추진</u> <u>2.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및 기업협업 체계 구축</u> <u>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제7조의4(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지역 산업체 및 기관과 연계한 표준현장실습 운영</u> <u>2. 고교·대학 연계형 현장기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u> <u>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제7조의5(AI스포츠센터) AI스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지역특화산업(진천형 K-스포츠 AI 사이언스)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u> <u>2. K-스포츠 AI 사이언스 허브 조성</u> <u>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제7조의6(생애전환센터) 생애전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지역산업 기반 지속가능한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u> <u>2.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직업전환 지원</u> <u>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제7조의7(우석다문화센터) 우석다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지역 맞춤형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u> <u>2. 상생하는 다문화 공동체 구축 및 지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u> <u>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u> 제7조의8(스포츠브랜딩센터) 스포츠브랜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지자체·지역주민의 현안문제 해결</u> <u>2. 스포츠특화도시 브랜드 마케팅</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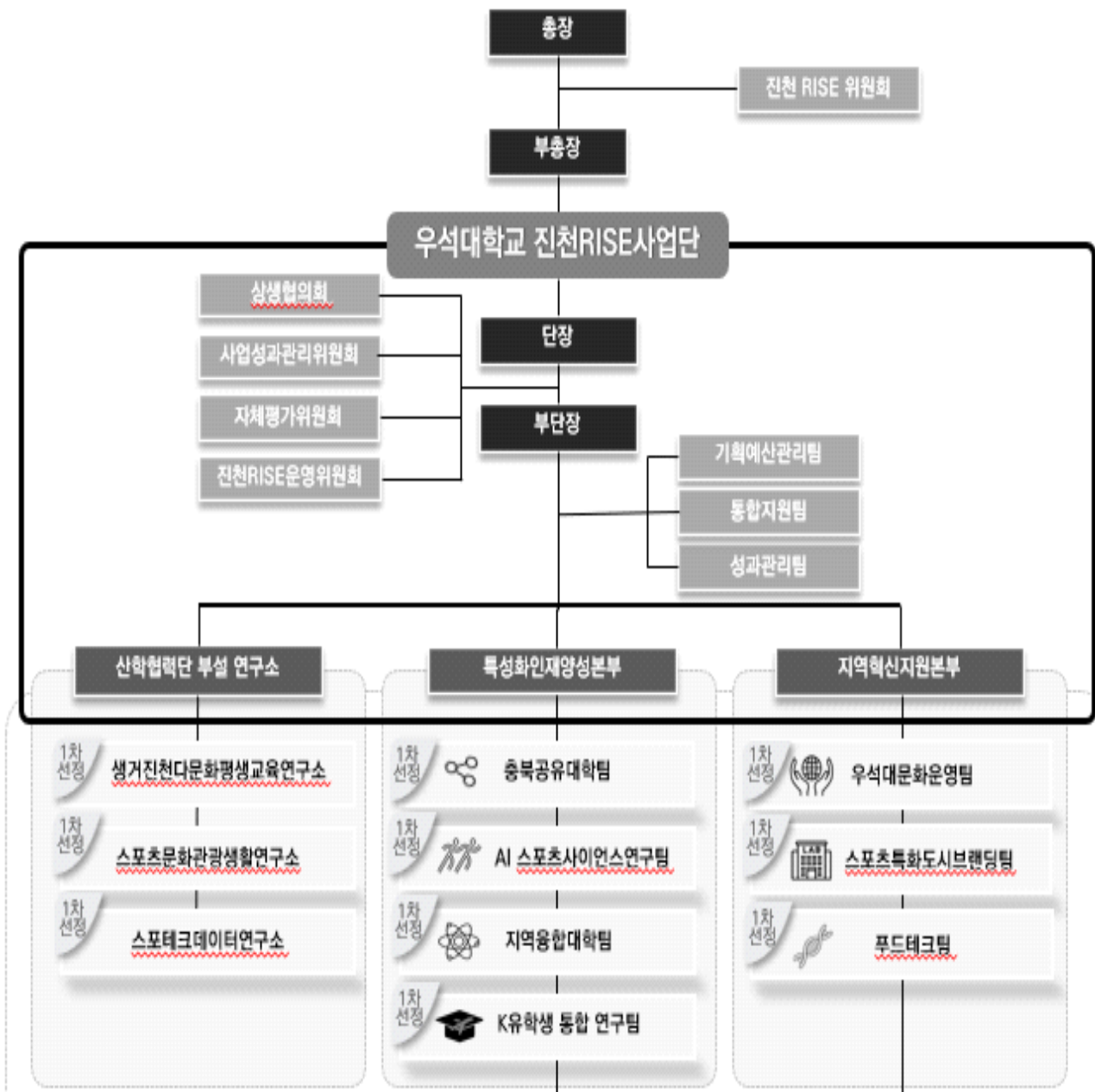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조 신설> <조 신설> <조 신설> <조 신설> <조 신설>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9(EDUAIR-BIO센터) EDUAIR-BIO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DX 기반 바이오교육혁신 및 핵심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 2.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및 현장연계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10(CPTED·AI센터) CPTED·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 AI융합 프로그램 운영 2. 생활안전·스마트시티 분야의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11(충북공유대학팀) 충북공유대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북 3대 전략산업(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2.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 추진체계 구성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12(푸드테크팀) 푸드테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통한 R&BD 수행 2.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기술사업화 실현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13(K유학생통합연구팀) K유학생통합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학생 현장 밀착형 교육 운영 2. 지역 정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 2 절 <u>지역혁신지원본부</u> 제8조(<u>지역혁신지원본부</u>) 우석다문화운영팀, 스포츠특화도시브랜딩팀, 푸드테크팀, 우석나우늘봄팀 업무를 총괄운영 한다. 제8조의2(<u>우석다문화운영팀</u>) <u>우석다문화운영팀은</u>	제 2 절 <u>진천RISE사업관리본부</u> 제8조(<u>진천RISE사업관리본부</u>) 통합관리센터, 기획예산관리센터, 성과관리센터 업무를 총괄운영 한다. 제8조의2(<u>통합관리센터</u>) <u>통합관리센터는</u> 다음 각

현행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맞춤형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2. 상생하는 다문화 공동체 구축 및 지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7로 이동] 제8조의3(<u>스포츠특화도시브랜딩팀</u>) 스포츠특화도시 브랜딩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지역주민의 현안문제 해결 2. 스포츠특화도시 브랜드 마케팅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8로 이동] 제8조의4(<u>푸드테크팀</u>) 푸드테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통한 R&BD 수행 2.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기술사업화 실현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7조의12로 이동]	<u>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사업단의 행정·인사·정보·소통·지원 2. RISE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8조의3(<u>기획예산관리센터</u>) <u>기획예산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사업단의 예산·기획·투자·조정·효율 2. 사업단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률 모니터링, 투자·성과비교 분석 3. RISE 위원회,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8조의4(<u>성과관리센터</u>) <u>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사업화 성과·지표·데이터·평가·품질관리 2.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운영 성과관리 3. 각 사업의 컨설팅, 세미나, 홍보 등 운영 4.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5.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u>제 3 절 기획예산관리팀 등</u> 제9조(<u>기획예산관리팀</u>) <u>기획예산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사업단의 운영 기획 및 평가 지원 2. 사업단의 예산 편성 및 결산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8조의3로 이동] 제10조(<u>통합지원팀</u>) <u>통합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사업단의 행정 지원 2. 진천RISE 위원회,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8조의2로 이동] 제11조(<u>성과관리팀</u>) <u>성과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사업화 기획 및 교육 성과분석 2.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운영 성과관리 3. 각 사업의 컨설팅, 워크숍, 홍보 등 운영	<u><전문삭제></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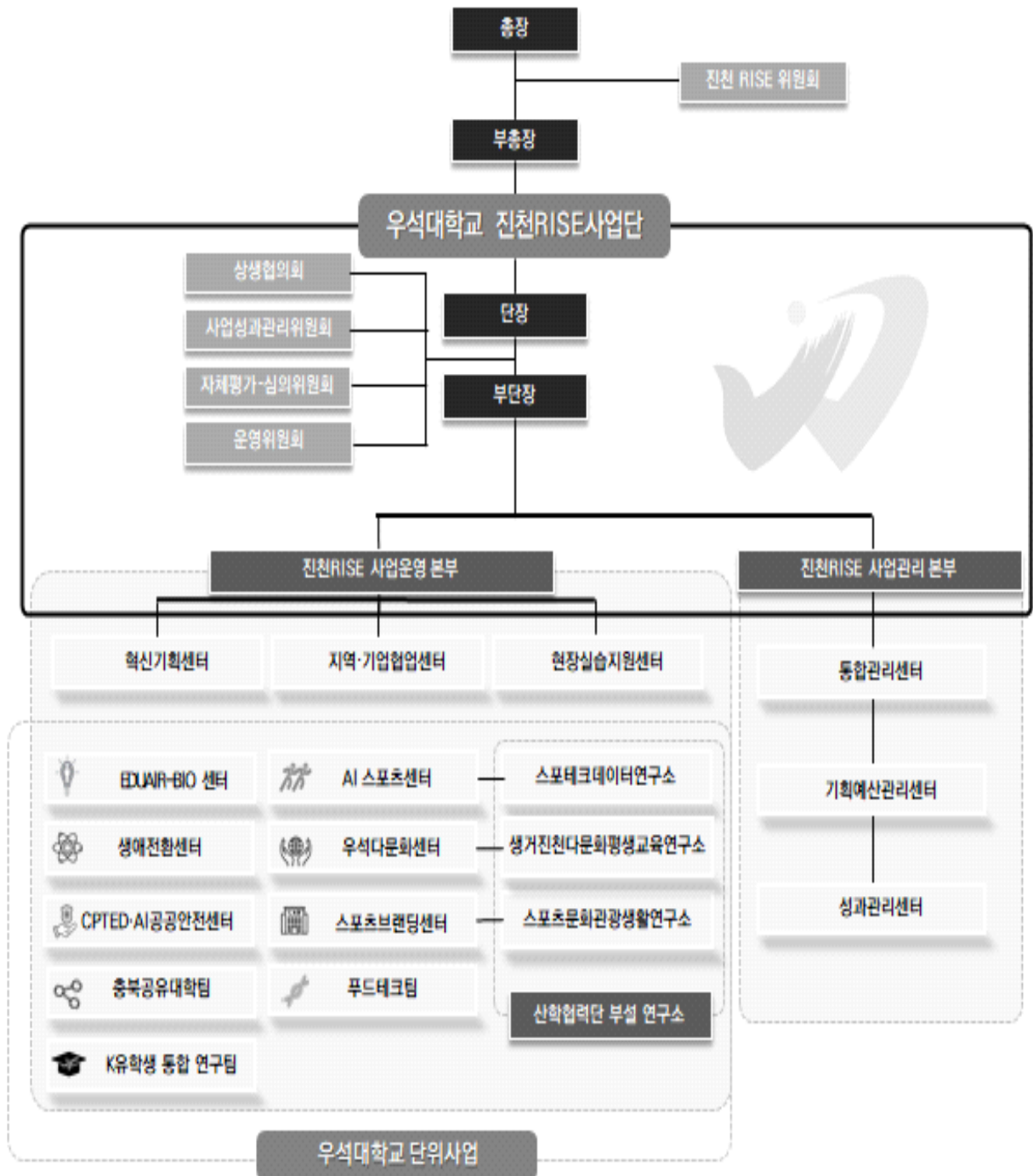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4. 자체평가위원회, 사업성과관리위원회 운영 5.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제8조의4로 이동] 제12조 <삭제 2025.5.27.> 제13조 <삭제 2025.5.27.> 제14조 <삭제 2025.5.27.> 제15조 <삭제 2025.5.27.>	
제 4 장 위원회 제16조(RISE 위원회) ①진천RISE사업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RISE 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RISE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2. RISE사업 예산 및 결산 3. RISE사업 정책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진천RISE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진천부총장, 교학처장, 지산학융합원장, 진천RISE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진천RISE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7조(상생협의회) ①진천RISE사업 지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RISE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생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 간 파트너십 구축 2. 지역 현안 문제 해결 3. 지역사회 공헌 활동 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②상생협의회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상생협회의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8조(사업성과관리위원회) ①진천RISE사업 사업성과관리 및 성과 점검, 환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제 4 장 위원회 제16조(RISE 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진천RISE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예산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상생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상생협회의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예산관리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18조(사업성과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RISE사업 실행과제 성과분석 2. RISE사업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3. RISE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자문 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②사업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사업성과관리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성과관리팀장</u>으로 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 ①진천RISE사업 이행률과 산학협력 사업 수행 평가를 위하여 <u>자체평가위원회</u>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RISE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RISE사업 평가지표 개발 3. RISE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4.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②자체평가위원회는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성과관리팀장</u>으로 한다.	③사업성과관리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성과관리센터 직원</u>으로 한다. 제19조(자체평가·심의위원회) ①진천RISE사업 이행률과 산학협력 사업 수행 평가를 위하여 <u>자체평가·심의위원회</u>를 두며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자체평가·심의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u>성과관리센터 직원</u>으로 한다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현행 기구표)



(개정(안) 기구표)



2.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 과 같다.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 과 같다.				
제39조(학위수여)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중 별은 별표2 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8호)로써 행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중 별은 별표2 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8호)로써 행한다.				
<신 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교 육 학 과	88명	교 육 학 과	43명	인문 사회	교 육 학 과	88명	교 육 학 과	43명
	아 동 복 지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글로벌경영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과	
	교 육 및 학 령 적 기 별 학 과		교 육 및 학 령 적 기 별 학 과			교 육 및 학 령 적 기 별 학 과		교 육 및 학 령 적 기 별 학 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		-			-		-	
	예 술 경 영 학 과		-			예 술 경 영 학 과		-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자연 과학	한국어교육학과	88명	한국어교육학과	43명	자연 과학	한국어교육학과	88명	한국어교육학과	43명
	외 식 경 영 학 과		외 식 경 영 학 과			외 식 경 영 학 과		외 식 경 영 학 과	
	관광문화경영학과		-			관광문화경영학과		-	
	약 학 과		약 학 과			약 학 과		약 학 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간 호 학 과<삭제>		-			-		-	
	간 호 학 과<가정전문간호사>		-			간 호 학 과<가정전문간호사>		-	
	간 호 학 과<응급간호사>		-			간 호 학 과<응급간호사>		-	
	재 활 학 과		-			재 활 학 과		-	
공학	작업치료학과<삭제>	88명	-	43명	공학	-	88명	-	43명
	물 리 치 료 학 과		-			물 리 치 료 학 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동아시아조경학과		조 경 학 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조 경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제 약 공 학 과		제 약 · 화 장 품 공 학 과			제 약 공 학 과		제 약 · 화 장 품 공 학 과	
	-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		-	
	수소모빌리티공학과		-			수소모빌리티공학과		-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한 의 학 과		한 의 학 과			한 의 학 과		한 의 학 과	
의학	체 육 학 과	88명	체 육 학 과	43명	의학	체 육 학 과	88명	체 육 학 과	43명
	-		-			-		-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스포츠과학과<삭제>		스 포 츠 과 학 과			-		스 포 츠 과 학 과	
	예술학과<삭제 이동>		-			-		-	
계	35개 학과	88명	26개 학과	43명	계	31개 학과	88명	26개 학과	43명

현행					개정(안)				
- 진천캠퍼스					- 진천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경영학과	10명	-	3명	인문사회	경영학과	10명	-	3명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공학	컴퓨터공학과				공학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재난안전공학<삭제>		재난안전공학과<삭제>			-		-	
(신설)	<신설>		<신설>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스포츠융합학과	
	<이동신설>		-			예술학과		-	
계	5개 학과	10명	2개 학과	3명	계	6개 학과	10명	2개 학과 학과	3명
2. 교육대학원					2. 교육대학원				
학과	전공			입학정원	학과	전공			입학정원
교육학과	특수교육, 수학교육<삭제>, 영어교육<삭제>,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60명	교육학과	특수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60명
계	9개 전공			60명	계	7개 전공			60명
3. 경영문화대학원					3. 경영문화대학원				
- 전주캠퍼스					- 전주캠퍼스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삭제>		10명	가족복지학과		-		10명
		미용경영학과<삭제>			-		-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5개 학과		10명			3개 학과		10명
- 진천캠퍼스					- 진천캠퍼스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건축도시조경부동산학과<삭제>				5명	-				5명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2개 학과		5명			1개 학과		5명
【별표 2】					【별표 2】				
학위종별					학위종별				
1. 일반대학원 : 현행과 같음					1. 일반대학원				
계열	학과	학위종별		<th rowspan="2">계열</th> <th rowspan="2">학과</th> <th colspan="2">학위종별</th> <td></td>	계열	학과	학위종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인문사회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인문사회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아동복지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아동복지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특수교육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특수교육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예술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예술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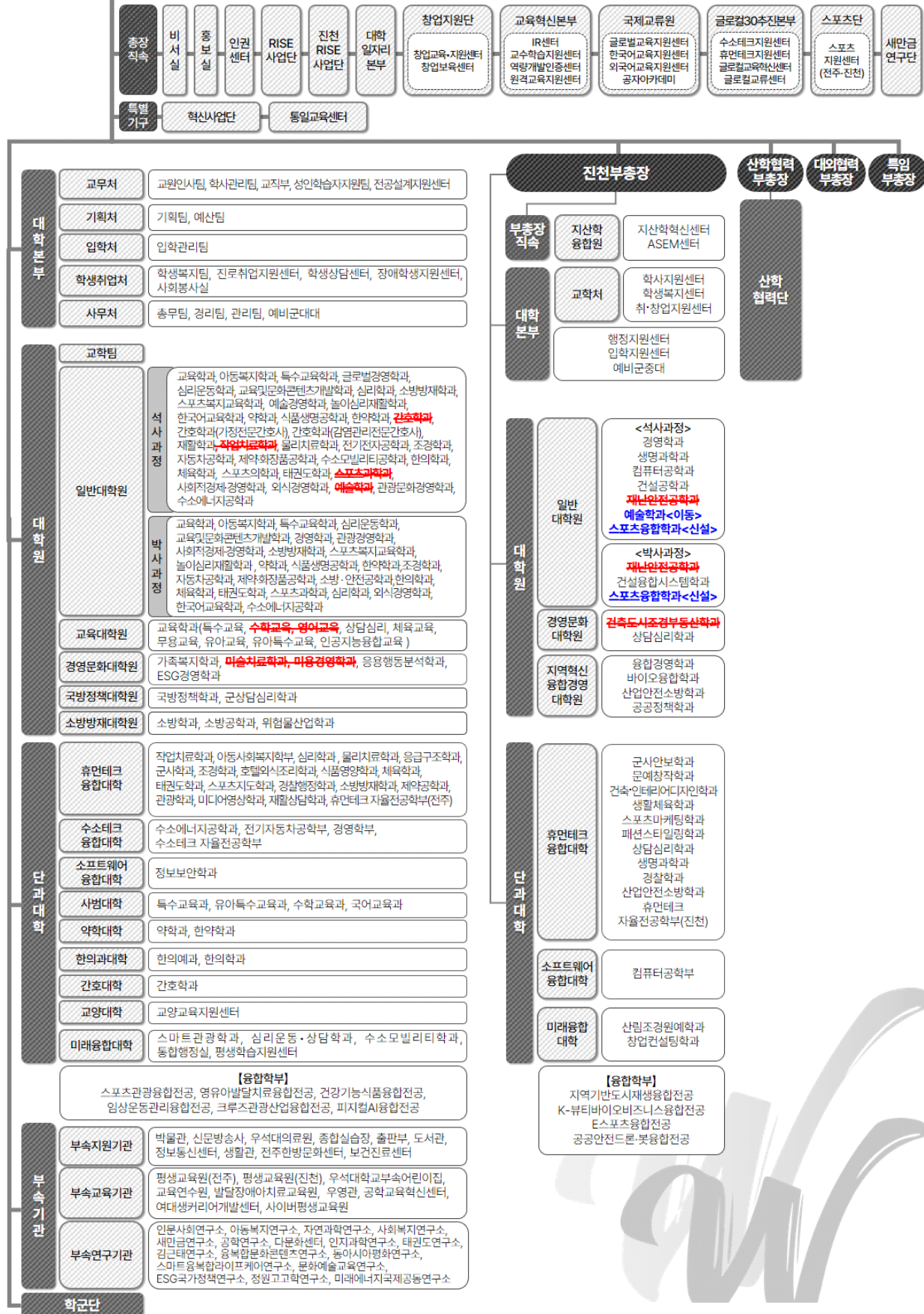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법학석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법학석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심리학	심리학석사	심리학박사		심리학	심리학석사	심리학박사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박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학석사 경영학석사	사회적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학석사 경영학석사	사회적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석사	소방방재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석사	소방방재학박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석사	스포츠복지교육학박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석사	스포츠복지교육학박사
	국제교육문화학과	-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국제교육문화학과	-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석사	문학박사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석사	문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외식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외식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관광문화경영학과	관광학석사			관광문화경영학과	관광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자연과학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자연과학	생명과학	이학석사	-		생명과학	이학석사	-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한약학과	한약학석사	한약학박사		한약학과	한약학석사	한약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간호학과 (가정전문간호사)	간호학석사	-		간호학과 (가정전문간호사)	간호학석사	-
	간호학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간호학석사	-		간호학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간호학석사	-
	재활학과	재활학석사	-		재활학과	재활학석사	-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공학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공학	동아시아조경학과	공학석사	-		동아시아조경학과	공학석사	-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
	건설공학과	공학석사	-		건설공학과	공학석사	-
	건설융합시스템학과		공학박사		건설융합시스템학과		공학박사
	조경학과	-	공학박사		조경학과	-	공학박사
	자동차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자동차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제약공학과	공학석사	-		제약공학과	공학석사	-
	제약·화장품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제약·화장품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재난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재난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소방·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소방·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수소모빌리티공학과	공학석사	-		수소모빌리티공학과	공학석사	-
	수소에너지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수소에너지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의학	한의학	한의학석사	한의학박사	의학	한의학	한의학석사	한의학박사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예술	태권도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예술	태권도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예술학	예술학석사	-		예술학	예술학석사	
	<신설>	<신설>	<신설>		스포츠융합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3.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별표] 기구표 개정(안)

총 장



4.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0조(시험과목) ①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 시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2018.4.6., 2021.10.15., 2023.8.23.) ②교육대학원의 종합시험 과목은 교직 1과목 및 전공 2과목으로 한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종합 시험 과목에서 교직과목을 면제한다. ③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의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으로 한다. ④종합시험의 과목은 <u>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문구삭제></u>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직주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79조(학위청구논문지도) ①학위청구논문지도를 받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진행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u><문구신설></u>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지도 결과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위청구논문지도를 받는 학생은 소정의 학위청구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지도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시험과목) ①~③(현행과 같음) ④종합시험의 과목은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직주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79조(학위청구논문지도) ①학위청구논문지도를 받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진행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u>석사는 1회 이상, 박사는 2회 이상</u>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0조 개정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제79조 개정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에 3차수가 되는 재학생부터 적용한다.